

인터넷自由貿易地帶 創設과 우리의 課題(II)

(3) 市場上 爭點



김 종 순

〈삼화왕관(주) 전무이사〉

* 본고는 2회에 걸쳐 게재함

■ 目 次 ■

- I. 클린턴 美 大統領 메시지
- II. 地球村 電子商去來 基本 計劃
 - 1. 背景說明
 - 2. 基本原則
 - 3. 主要爭點
 - (1) 財政上 爭點
 - (2) 法律上 爭點
 - (3) 市場上 爭點
 - 4. 綜合戰略
- III. 美國의 事後措置와 우리의 對應方案

1) 情報通信技術

전자상거래는 현대적 세계적 통신망과 컴퓨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불행히도 어떤 국가는 그들의 통신정책이 디지털넷워크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각국의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고 주파수대역폭이 좁으며 서비스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또한 어떤국가는 통신장벽을 높게 쌓아 정보기술의 수입을 봉쇄하므로서 사업가와 고객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와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수많은 장벽을 허물기위하여 1994년 3월 남미 이르젠헌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세계통신발전회의(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연설문에서 고어 미부통령은 미국정부의 정책기조로 다음의 제반원칙을 제시하였다.

- ① 각국은 국영기업인 통신공사를 민영화하므로써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 ② 독점체제인 전화시장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적정요금 인하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독점금지를 보장하며
- ③ 넷워크에 대한 공개접속을 확대하여 범세계 정보세계정보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폭넓은 정보서비스를 확충하며

④ 정부독립기관으로 하여금 신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경쟁적이며 유연한 법규를 제정·시행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미국정부는 현행 네트워크에 주파수광역폭을 요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규제조치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정부는 차세대인터넷인 인터넷Ⅱ(Next generation Internet → Internet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든 국민들에게 주파수대역폭을 확대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강구 중이다.

미국의 목적은 정보제공업자(On-Line Service Providers)가 합리적이며 차별없는 조건으로 최종이용자에게 자유의사에 따라 접속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關心分野(Areas of concern)

- 通信線賃貸(Leased Lines)

정보제공업자의 네트워크는 국영전화 공사의 전화선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영전화공사는 값비싼 임대료를 받거나 정보제공업자의 서비스를 저해코자 사용제한 등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 地方循環線料金(Local Loop pricing)

정보제공업체는 국영전화공사의 지방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고율의 요금을 부담 하므로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고객에게 높은 사용료를 전가하게 된다.

- 相互接線과 價格差別化(Interconnection and unbundling)

정보제공업자는 국영공사의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그들의 고객에게 정보를 송출하게 된다. 이때 국영독점전화공사는 상호연결에 고율의 요금을 부과하거나 네트워크 호환성등을 이유로 접속을 거절하기도 한다.

- 네트워크附屬施設(Attaching equipment to the network)

지난 수년간 국영공사들은 그들의 독점권을 최대로 활용하여 통신연결을 저지해왔다. 지금은 많은 독점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쟁촉진을 방해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연결되지 못하도록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 인터넷과 멀티미디어(Internet Voice and multimedia)

일부국가 공무원들은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업자의 역활이 전화나 방송서비스와 유사하므로 기존서비스에 적용되었던 동일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허가사항으로 꼭꼭 묶어 놓고 있다. 이와같은 접근방법은 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지 국가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더불어 다수국가는 인터넷서비스의 촉진을 가로 막는 각기 다른 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외국인투자확대·시장경쟁촉진·각종 규정의 유연성·공개접속의 확충 등을 추구하는 정책도입이 정보인프라의 발전과 통신망확산을 재고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 바이다.

이와같은 논점에서 미국정부는 WTO협상에서 통신서비스분야의 무한경쟁도입과 정보제공업체의 협안문제를 다룰 것을 설득해 왔으며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질식시킬 수 있는 정부규제조치가 정보제공업자에게 부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WTO체제가 출범하자 미국의 희망은 세계통신시장의 경쟁원칙은 기술중립적(Technology Neutral)이며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정부허가제도는 소비자가 변하는 수요에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보편적 사용과 같은 중요공익을 정부가 각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공익목적은 모든 분야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모든 정보기술분야에 관세를 면제코자하는 1997년 3월 WTO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효과적시행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현재 새로운 정보기술협정(ITA-II)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잔여관세(Remaining Tariffs)를 완전면제코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정부는 각국과 상호확인협정(MRAS:Mutual Recognition Agreements)을 체결하여 국경통과시마다 동일상품이 이중으로 심사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APEC과 같은 지역협력기구, OECD 와 같은 다자간기구와 기타 모든 국제기구(ISO 등)등을 인터넷문제와 정보기술수출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을 해소코자하는 국제토론회로 활용코자 한다. 이들 문제점들에는 온라인통화적체(On-Line Traffic)과 어드레스지정(Addressing)과 신뢰성(reliability)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은 이 보고서에 제시된 각종 원칙들을 관철토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많은 인터넷문제는 정부와 민간분야의 공동참여하에 개별적이며 공개적 절차와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이 보고서에 제기된 주요목적을 달성하는데 민간업체가 주도적역할을 수행할 것을 전폭 지원할 것이다.

2) 内 容 物

미국정부는 국가간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지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홈

페이지, 뉴스서비스, 가상쇼핑몰, 영상물과 예술품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원칙은 민간기업, 학교, 도서관, 정부와 기타 비영리기관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정보에 확대되어 한다.

전통적 방송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은 사용자가 폭력적이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물로부터 그와 그의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보다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예컨데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은 부모들이 그들의 어린이를 선정적인 정보로부터 적극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내용물여과기술이 개발되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적용되던 기존 규제방안은 인터넷에는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불필요한 규제강화는 인터넷의 다양성과 성장성을 무력화 할 뿐이다.

그러므로 미국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율규제, 등급평가제 체택과 사용하기 쉬운 기술개발(예: 내용물여과기술 및 미성년 확인제도) 등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3) 4個最優先關心分野(4 Priority Of concern)

· 内容物規制(Regulation Of content)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각국의 각기 다른 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다.

인터넷내용물을 규제하려는 국가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이와같이 각기 상이한 법규는 지구촌 전자상거래를 저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미국정부는 이와같은 종류의 인터넷 규제방안에 주의깊은 관심을 갖고 비난성, 성명, 폭력, 선동, 도색 등의 각종 정책과제에 대하여 주요교육 대상국과 비공식적 대화를 가동코자 한다.

· 外國內容物割當制(Foreign Content Quotas)

일부 국가는 상당한 방송시간이 자국 제작

내용물에 할당되어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방송에 적용되는 규제방안이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각국은 외국내용물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제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외국내용물을 제한하지 말고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국과 협의코자 한다. 이와같은 문제해결은 조세감면유인으로 자국의 문화주체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 廣告規制(Regulation of Advertising)

인터넷광고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값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일부 국가는 광고의 장소, 원격쇼핑유형, 기간, 빈도, 수량, 사용언어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원칙적으로 이와같은 규제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 문화적 사회적 관심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한 이와 같은 규제는 인터넷에는 불필요한 것이다.

일부 국가는 광고피해를 보상하는 관계법을 갖고 있으며 광고업계의 자율규제방안을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정확하고 진실된 광고가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광고매체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많은 연구단체는 특히 어린이들이 광고에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미국은 어린이들을 유해한 광고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정을 제정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이와 같은 보호조치가 온라인미디아상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업계와 어린이보호단체와 공동감시할 것이다.

인터넷을 최초로 만든 국가(Country of Origin)의 규정이 세계각국의 법적 장애물과 통상장벽을 완화하는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詐欺防止規制(Regulation to Prevent Fraud)

최근 회사나 주식의 거짓정보와 허위투자계획 등이 인터넷에서 많은 물의를 빚었다. 따라

서 연방무역위원회와 증권감독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의 사기행위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중에 있다.

인터넷의 상업적, 문화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가 공정하게 표기되고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며 반품과 보상이 확실히 보증되는 신뢰감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며 허위, 사기, 부당한 상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국제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국무성, 무역대표부, 상무성, 연방무역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연방정부는 OECD, G-7, APEC 등에서 쌍무간,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이미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을 강조해 왔다. 앞으로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할 미국대표는 내용물관리취급에 있어 이 보고서에 실린 원칙에 따라 합리적 실용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4) 技術標準化

기술의 표준화는 각종상품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신속하게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번영의 필수요소이다. 또한 표준화는 경쟁에 축진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표준화가 자주 바뀌면 구기술을 너무 빨리 무용지물화하게 된다. 한편 실제로 비관세장벽으로 이용되어 국내시장의 비토착사업들을 추방하기도 한다.

미국정부는 정보통신장비의 공동상호이용(Interoperability)과 기술표준화는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근래 신기술이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표준을 정부가 제정하다는 것은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전자상

거래에 있어 정부가 표준화를 주도하려는 것은 불필요하고 협명치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주도의 다자간협상방법으로 기술표준화가 이룩되기 바라는 바이다.

인터넷교역을 발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신뢰성, 공동활용성, 사용편의성과 적정규모성이 보장되는 기술의 표준화가 다음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電子支拂制度(Electronic Payments)
- 安全強化(Security)
- 安全サービスインフラ(Security services infrastructure)
- 著作権管理(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s)
- 畫像會議(Video and Data-Conferencing)
- 高速ネットワーク技術(High-speed Network Technologies)
- デジタル客體와 資料交換(Digital object and data exchange)

범세계정보고속도로상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하나의 표준규격으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표준이 시장경쟁에 필요하다. 또한 다른 경우에는 각기 다른 표준이 다른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민간분야의 자율적 기술표준의 보급과 인터넷특성에 알맞는 표준규격개발만이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표준화는 여러기관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들이 비관료적 절차로 자율규제 표준화방안을 제정하기 때문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소수국가만이 민간주도의 기술표준화 발전을 허용하고 다수 국가는 정부 위임하의 기술표준화를 추진하므로써 오히려 비관세장벽을 쌓고 첨단기술발전을 퇴보케 하고 있다.

여러 민간기구들이 각종 정보통신장비의 상호 공동이용을 촉진하는 자율규제 표준화 방안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민간표준화 기구의 자율적 표준화 개발을 후원해 왔으며 또한 국내외적으로 민간분야의 자율기술 표준화규격의 승인과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아직은 정부차원의 공식적 협상지원이 요구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각종 민간기구(ISO, IEC, ITU 등)를 통하여 범세계정보고속도로상에 자유무역거래를 방해하는 장벽을 쌓으려는 각국의 표준화규제를 강력히 거부할 것이다. 민간분야가 기술표준화사업에 있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각종 국제기구를 통하여 민간주도의 기술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4. 綜合戰略(A Coodinated Strategy)

전자상거래의 번영은 민간기업주도하의 정부와 민간의 효과적 협력관계 구축을 전제로 한다. 정부의 개입은 조심성있게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부 기관간의 각기 다른 주장으로 혼란과 모순을 야기해서는 아니된다.

각종 문제제기, 상호작용과 의견토론에서 정책의 비효율성과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합적이며 목표지향적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와같은 전략을 개신하고 발전단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합동기획단을 편성·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 정책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자원이 동원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각종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이 보고서만큼이나 중요하다.

미국정부는 이 보고서내용을 시행하고 개신하기위하여 향후 수년간 민간단체, 소비자, 의회, 지방정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공개적으로 수시로 협의를 지속할 것이다.

민간기업 주도체계가 오늘날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성공은 지속적인 민간분야의 리더쉽에 달려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사생활 보호, 내용물 등급평가, 소비자 보호 등의 자율규제분야와 기술표준화, 통일규범제정, 상호사용증진 등에서 민간기업이 주도하기를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이 보고서에 기술된 각종 전략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전자상거래의 번영을 촉진함에 따라 계속 수정되어 새로운 개정판이 발간될 것이다.

인터넷교역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만일 민간분야와 각국 정부가 협명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면 이 기회는 세계 모든 인민들에게 충만한 행복을 실현하게 할 것이다.

III. 美國의 事後措置와 우리의 對應方案

1. 인터넷交易의 意味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매, 수주, 발주, 운송, 통관, 결재, 광고 등 제반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대금결재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나 스마트 카드나 전자화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기업에게는 유통비용, 전물임대료, 인건비 등을 대폭 축소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PC나 TV로 집에 앉아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 인터넷교역규모는 년간 5억달러이나 인터넷 이용자가 올해 1억3천만명에서

2000년에 2억명으로 늘어나면 교역량도 6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美國의 準備와 措置

미국은 21세기 정보화사회 출범에 대비하여 최우선 정책과제로 국가정보고속도로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formation Superhighway)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이 국가정보고속도로는 오늘날의 사업사회를 미래의 정보사회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생활의 질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그들이 원하는 쾌적한 곳에 살면서 원격처리(Tele Commuting)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학생은 지리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류학교, 일류교수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은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정보서비스나 의료봉사를 줄어서 기다리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1993년 9월 백악관직속기관으로 정보기획단(IITF: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을 발족시켜 2000년까지 다음의 7개 주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1) 平生教育(Electronic And Life-Long Learning)
 - 2) 電子商去來(Electronic Commerce)
 - 3) 環境 및 資源管理(Environmental Monitoring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4) 電子政府(Government Service)
 - 5) 醫療奉仕(health Care)
 - 6) 電子圖書館(Libraries)
 - 7) 工場自動化(Manufacturing)
- 1997년 7월 1일 클린턴 미대통령의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발표는 위의 7대정책 과제의 하나인 전자상거래(EC:Electronic Commerce)를 200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확대 실시 코자 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미대통령은 관계장관에게 다음의 조치를 특별명령 하였다.

첫째: 모든 연방정보의 수장은 그들의 정책이 지구촌전자상거래와의 관련여부를 검토하고 이 보고서의 5대 기본원칙에 일치하는가를 검토할 것.

둘째: 관계장관은 아래와 같이 2년내(Within The Next Year) 우리의 주요목적을 달성할 것.

- 재무장관은 전자상거래상에 새로운 내국세과세를 방지하는 국제협상을 촉진 할 것.

- 무역대표부는 WTO를 통하여 12개월 내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화(A free-Trade Zone)하므로서 관세를 면제케 하고 각종 정보 통신협정을 체결하여 내용물 규제, 기술표준화 등 무역장벽 을 철폐토록 할 것.

- 상무장관은 인터넷상 지적소유권 보호 제도를 확립토록 할 것이며, 지구촌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국제 통일규범을 제정할 것.

- 관계정부기관은 상무성과 민간기업의 협조하에 인터넷보안대책을 강구할 것.

- 상무장관과 수석보좌관 아이라 맥거지너(Ira Magaziner)는 다음주 유럽 등에 출장하여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에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충분히 설명할 것.

셋째: 민간분야에서는 미국국민 개개인의 생활비밀보호를 위한 효과적방법 개발에 적극협조해 주기 바람.

3. 世界各國의 反應

○先進國의 反應(CNN 97. 7. 8)

독일 본에서 개최된 인터넷교역에 대한 EU 회담은 새로운 무역장벽과 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클린턴 미대통령의 제안을 전폭 지지한 것은 아니다. 이 회의에는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등 40개국의 각료가 참석하였다.

공동선언문은 인터넷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암호기술(Encryption technology)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인터넷상에서 비차별적 과세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탈세행위는 강력단속 할 것을 주장하였다. 29개국의 공동선언문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는 서명하지 아니했다.(21세기 정보사회출범에 대비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브란서, 이태리 캐나다 등 G7 국가는 94년 12월부터 국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전자상거래 등 10대사업을 국가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현재 공동추진중에 있다.)

○우리의 反應(중앙일보 97. 7. 21)

97년 7월 14일 방한한 미국특사 맥거지너는 기자와의 회견에서 무관세화의 추진대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로서 통관절차를 요하는 실물상품의 거래는 제외되며 조세의 부과, 통일규범제정, 지적재산권보호, 보안강화, 내용물규제, 기술표준화의 6개분야는 98년 말까지 국제합의를 완료하고 지불제도, 사생활보호, 정보통신기술의 3개분야는 99년 말까지 준비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인터넷교역을 전세계에 걸쳐 확대실시 하자는 것이다.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관세화와 내국세 신설 금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당분간 현행과세 체계를 유지하며 통일규범마련, 지적재산권 보

호 등은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와 연대하여 다자간협상으로 인터넷라운드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다.

4. 우리의 對應方案

1997년 7월 1일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한 클린턴 미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21세기에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상공간에서 정보혁명의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미국의 소비자, 중소상인, 대기업임원들은 가장 먼 행성의 끝까지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바른 길 위에서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특징인 혁신성과 유연성과 창조성은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거대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곳에는 기회가 살아 숨쉬므로서 우리가 서로보다 가까이 하며 미국을 세계에 보다 접근하게 할 것이다.

미래는 착실히 준비하는 민족의 것이다. 변변한 자원이 없는 우리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 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현재의 암기위주의 교육제도를 창의와 다양성이 만발하는 교육개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21세계 정보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 인터넷이 짧은 기간에 이처럼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주도의 분권화조직과 하의 상달방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최소의 법제정으로 민간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한 게임의 장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주요시안별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1) 關稅와 內國稅賦課

인터넷서비스와 인터넷관련 시설제품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요하는 실물상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무관세화는 찬성하지만 당분간 현행 관세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서비스에는 현재도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인터넷 시설물에 대한 관세면제는 통신시설 수출경쟁력을 고려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내국세부과 금지주장은 현행 부가가치세가 재화와 서비스에 관세하고 있음으로 기존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電子支拂制度

전자지불제도의 기술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이며 비탄력적인 규정제정보다는 단기적으로 현행의 매전처리(Case by Case monitoring)가 바람직하다. 정부는 전자자금이 체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3) 統一規範制定

인터넷교역은 새로운 상거래규범으로 전자계약 - 전자서명 - 거래분쟁해결 - 위반시 책임부담 - 전자기록인증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범제정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UN이 정한 모델법을 기초로 하여 적용범위, 전자상거래 대상, 규제사항, 위반시 처벌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 중이다.

4) 知的財產權 保護

전자상거래는 지적재산권판매를 수반한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를 통하여 협상할 것이며 범세계정보고속도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DB)와 도메인명(DNS)관리도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알맞게 관계국내법을 조속히 제정 비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도메인명사용에 있어 상표명과 상충시에는 최근 영국법원 상표권침해 판결에서와 같이 기존 상표권이 우선토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도메인명도 미국은 3단어(예:www. ibm. com)를 사용하고 미국외의 세계 각국은 4단어(예:www. samhwa co. kr)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일관된 체계로 일원화 되야 할 것이다.

5) 私生活 保護

인터넷넷워크환경에서 개인사생활보호는 절대필요사항이다.

자료수집자는 피수집자에게 자류수집의 통보의무가 있어야 하며 피수집자는 자료 수집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대행권을 소유토록 하자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정보의 흐름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생활보호와 정보의 공정한 사용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시급히 제정비해야 할 것이다.

6) 保安強化

인터넷사용자가 통신과 자료의 비밀보안 유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인터넷 교역은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암호사용기술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차원에서 암호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는 암호수출통제를 조속히 해제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며, 암호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예 SET: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7) 情報通信技術促進

현재 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통신정책으로

무역장벽을 쌓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지구촌 전자상거래는 최신기술 통신망과 컴퓨터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국은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고객에게 저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정부조달품목 15조원을 전자상거래로 조달하여 정보통신기술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며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와 연대하여 다자간 협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8) 内容物規制

내용물규제는 민간자율규제, 등급평가제와 여과기술개발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적자원을 풀가동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등의 영상사업, 데이터 베이스 온라인 신문 등의 정보서비스, 기술정보, 재무서비스, 전문기술서비스 등의 종합내용물 육성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 음란물 규제방안은 별도 강구해야 될 것이다.

9) 技術標準化

기술표준화촉진은 시장경쟁원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 할 수 없으므로서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할 뿐이다. 정부는 2000년까지 200여개 전자상거래 관련규격을 표준화하여 민간업계에 보급할 예정인 바 이 문제도 민간분야의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표준화는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마인드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앨 고어 미부통령의 연설문 일부를 소개한다.

「오늘날 인류문명은 금속인쇄물의 발명에 따라 크게 촉진된 것이다. 금속인쇄술은 500년 전 독일의 구텐베르크(Gutenberg)가 발명한 것으로 당시 그는 성경(Bible)을 출판하기 위하여 금속인쇄판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인쇄판 중 틀린 글자(Data wrong)를 발견하고 이를 고치기를 고심하던 중 이동식(Movable type) 금속인쇄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구

텐베르크보다 200년전 금속인쇄술이 발명된 역사기록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이동식 금속인쇄술(Movable metal type)이 세계최초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금속인쇄술이 번창하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 정부는 지식의 대중적 전파를 우려하여 일부 공맹서적만을 출판토록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熱鬧中著一冷眼，便省許多苦心思。冷落處存一熱心，便得許多真趣味

일 많아 바쁜 때에 한 번 냉정한 눈으로 보면 문득 허다한 괴로운 생각을 덜게 되며, 일이 뜻대로 안 될 때에 한번 뜨거운 마음을 지니면 문득 허다한 참 취미를 얻게 된다.

- 菜根譚 중에서 -